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37호 2018. 1. 16. (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621호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7
- 정선군 조례 제2622호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조 례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19.)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21호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를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각호와” 를 “각 호와”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 “직무” 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 을 “ “직무” 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회기 중” 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 “의정활동비” 라 함은” 을 “ “의정활동비” 란” 으로,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 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 “상해” 라 함은” 을 “ “상해” 란” 으로 한다.

제3조 제명 “보상금지급대상”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총무처 훈령)을 준용한다”를 “「공무원연금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명 “보상금지급기준”을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제2호각목의”를 “제2호 각 목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제1항각호의”를 “제1항 각 호의”로, “정선군 의회의장”을 “정선군 의회 의장”으로, “군수에게”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원상해등”을 “의원 상해 등”으로,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인이내”를 “5명 이내”로 하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	<u>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 --- 뜻은 --- 각 호와 -- 1. “직무”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 ----- -----. 2. “의정활동비”란 ----- ----- -----.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 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총무처 훈령)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각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각호의 청구권자가 정선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

말한다.

5. “상해”란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 각 호와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 ② --- 각 호의 -----
----- 「공무원연금법」 등 관
련 규정-----.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
----- 각 호와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2호 각 목의 -

-----.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
----- 각 호와 ---.

1. ~ 2. (생략)

- ② -----
----- 1년 이내에, -----

----- 제1항 각 호의 --
----- 정선군의회 의장-----
-----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
- 의원 상해 등-----

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상심의회 구성)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11조(간사) ① 보상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략)

----- 기간 내에 -----

-----.

제6조(보상심의회 구성) -----
----- 5명 이내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

-----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

-----.

제11조(간사) ① -----
----- 간사 1명 -----.
② (생략)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제명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 “폐질등급” ⇒ “장애등급”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정비
 - 제명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조문정비(안 제1조~제7조, 안 제11조)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19.)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22호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에 대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에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를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u>의원</u>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 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56만원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생 략)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u>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에게</u> ----- ----- ----- -----. 제2조(의정활동비) ① <u>정선군의회 의원</u> (이하 “의원”이라 한다) -----. ②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 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 -----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준용) ----- -----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

제안이유

-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 받고 있으나,
-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정비
 - 제명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조문정비(안 제1조~제3조, 안 제5조)